

제 목 : 한국은행, 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 운용기한 연장

-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9일 회의에서 「**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**」(5.4일 신설)의 **운용기한**을 종전 2020년 11월 3일*에서 2021년 2월 3일로 **3개월 재연장**하기로 의결하였음

*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.30일 동 제도의 운용기한을 1차로 3개월 연장(8.3일 → 11.3일)한 바 있었음

※ 「**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**」는 **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** 가능성에 대비한 **안전장치(safety net)**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**언제든** 한국은행으로부터 **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(standing lending facility)**

(붙임) 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 운용 개요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최재효, 차장 임인혁
Tel 02-759-4491, 4502 Fax : 02-759-4490
공보관 : Tel 02-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(붙임)

「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」 운용 개요

1. 대상기관*

*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,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

- (은행)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(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)
- (증권)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, ② RP매매 대상기관, ③ 국채전문딜러(PD)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
- (보험)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

2. 총 대출한도: 10조원*

*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% 이내

3. 대출기간: 6개월 이내

4. 대출담보: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(AA- 이상*) 회사채**

*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

** 후순위채, 전환사채·교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,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

5. 대출금리: 통안증권(182일) 금리*에 0.85%p를 가산한 금리

* 4개 민간채권평가사(KIS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나이스피앤아이, 에프앤자산평가) 평균 기준.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

6. 대출방식: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

7. 회수방식: 만기 일시 상환

○ 중도 상환 가능

8. 이자수취 방법: 만기시 후취

9. 제도 운용기한: 2021년 2월 3일